

1. 개정이유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9.11~'20.3) 반영

-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관련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정상작동 여부 검사근거 마련 등 검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 요소수 + NO_x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₂) + 질소(N₂)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

2. 주요내용

가. 경유자동차의 매연 배출가스 검사기준 및 방법 개선

- 1) '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차량의 매연검사(무부하급가속)에 적용한 “배출허용기준보다 5% 완화” 규정 삭제(안 별표 21 제1호차목)

* 일시적인 공기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5% 완화 조치 → 현재 성능개선으로 불필요

- 2) 경유차의 DPF 성능유지 검사기준(매연 10% 이하)을 적용하여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 3) 무부하검사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기검사의 실효성·통일성 확보(안 별표 2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 4초 이내에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하되 1초 이내 급가속 → 최고회전속도 도달 후 1초간 유지 → 정지가동상태로 5~10초간 두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사방법의 혼선 방지

나.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검사제도 확대

- 1)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현재 중·소형에서 대형화물차까지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 2) 현재 수도권만 적용에서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 3) 배출가스 검사항목(부품·장치의 작동상태 확인)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센서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근거법 마련(안 별표 26 제2호나목)

다.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 1) 정밀검사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는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 시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4호)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어야 함으로 이를 명시(안 별표 24 제1호다목)
- 3)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 전후 31일”로 변경(안 별표 25
비고 제8호 및 제9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부 공동훈령)」 개정('19.3.31)

-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21)에 맞게 일산화탄소 검사기록
표기법 일치(안 별표 26 제3호나목(3)(나))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제출서류 간소화

-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서류를 전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안 제86조의2제1항)
-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안 제86조의5제3항, 별지
제40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서류”로 한다.
제86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1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대형의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란 다음에 2016년 9월 1일 이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	--------

별표 21 제2호나목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대형의 제작일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제작일자	매연			질소산화물
		1모드	2모드	3모드	3모드
가)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70%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0% 이하			—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0% 이하			—
	2016년 9월 1일 이후	8% 이하			900ppm 이하
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
	2008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15% 이하			—
	2016년 9월 1일 이후	8% 이하			900ppm 이하

별표 21 제3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서울특별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로, “대해서만”을 “대해서만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영 제54조”를 “법 제63조제1항 각 호”로, 같은 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같은 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같은 호 중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를 “따른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에”로 한다.

별표 22 제1호나목의 검사기준의 검사방법란 중 “N”를 “중립(N) 또는 주차(P)”로 하고, 같은 호 라목가) 전단 중 “급가속하여”를 “1초 이내에 최대로 밟아 급가속하여”로, “2초간”을 “1초간”으로, “5~6초간”을 “5~10초간”으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정도”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다)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동기가 정지가동상태에서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1초 이내 급속히 밟고 가속되는 시점부터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한 후 정지가동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매연농도를 측정한다. 이때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밟을 때부터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내로 한다.

별표 22 제1호라목다) 후단 중 “가속페달을”을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로, “놓을”을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별표 2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별표 25 제8호 중 “60일(변경등록일부터 60일)”을 “62일(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 본문 중 “만료일”을 “만료일(정밀검사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로, “30일”을 “31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6 제1호바목에 나목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1)(나) 중 “둘째자리 이하는”을 “셋째자리 이하는”으로, “0.1%”를 “0.01%”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둘째자리”를 “셋째자리”로, “0.1%단위로”를 “0.01%단위로”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2)(1)) (다) 중 “최대출력 및 매연”을 “최대출력, 매연 및 질소산화물”로 한다.

라) 자동차는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 진단장치를 연결하여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질소산화물 센서, 요소수 관련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별표 26 비고 나목에 2)(다)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3모드에서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별표 26 비고 나목에 2)(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종전의 2)(1)) (마) 중 “매연농도”를 “매연 농도”로, “최종측정치”를 “최종측정치로 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산출한 값

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라) 매연 농도는 각 모드에서의 최종측정치가 모두 매연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3모드에서의 최종측정치가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①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②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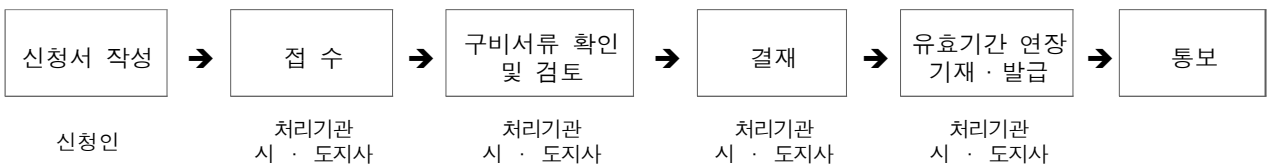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사”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 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행사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u>서류</u> ----- ---- <u>서류</u> -----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시·도지사</u>	

③ (생 략)	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